

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3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11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개정이유

국가보훈처의 「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」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진료비 등을 감면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로 신설
(안 제3조제2항제8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

「국가보훈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2) 입법예고(2006.10.20~11.9)결과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동조동항 제8호를 제9호로 한다.

8. 국가보훈대상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 ~ ② (생 략) 1. ~ 7. (생 략) 〈신 설〉 <u>8.</u> (생 략) ③ (생 략)	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8. 국가보훈대상자</u> <u>9.</u>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